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243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남 하동군 C 대 198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(ㄱ) 부분 112.63㎡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, 같은 도면 표시 (ㄴ) 부분 35.75㎡ 지상 경량철골조 강판/판넬지붕 2층 소재 주택, 같은 도면 표시 (ㄷ) 부분 1.43㎡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2층 소재 보일러실, 같은 도면 표시 (ㄹ) 부분 21㎡ 지상 경량철골조 강판/판넬지붕 2층 소재 창고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22. 3. 3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3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22. 3. 31. 주문 제1의 가.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(ㄱ) 내지 (ㄹ) 부분 지상에 미등기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소유하여 점유 중이다.

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, 2022. 3. 31.부터 위 토지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3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아영